



<점과 점으로 세상을 잇다>

식약처, 규제혁신으로 점자 표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

- 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·의약외품 등 소관품목 점자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점자 표시 관련 표준화된 규격, 방법, 표시위치 등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제공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·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.

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점자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.

의약품 분야에서는 ❶「약사법」안전상비의약품 및 일부 의약품·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*('24.7.21. 시행) 했고, 식품 분야에서는 ❷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표시 대상·기준·방법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화('23.12.14. 시행)했다.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❸「의료기기법」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,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적·기술적 지원('24.6.14. 시행)하도록 하였다.

* 식의약 규제혁신 2.0 과제('23.6월) : 총 80개 과제 중 ▲(8번) 시각·청각장애인도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

아울러 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·의약외품 등에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표시규격, 방법, 표시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*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.

* (식품)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, (의약품)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, (의약외품)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, (의료기기)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
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“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, 의료제품 등에 점자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오유경 처장은 “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”며, “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 추가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,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“모든 국민이 식품, 의료제품 등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·협력하여 점자 표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강희 (043-719-1501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식 (043-719-1531)
<협조>	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철희 (043-719-2191)
		담당자	사무관	조혜영 (043-719-2182)
<협조>	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	문은희 (043-719-2651)
		담당자	사무관	한연해 (043-719-2656)
<협조>	바이오생약국 의약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상우 (043-719-3701)
		담당자	사무관	한송이 (043-719-3702)
<협조>	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	책임자	과 장	정 호 (043-719-38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완 (043-719-3815)

